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5,337,442	4,960,123
일반회계		157,548,632	4,726,459
특별회계		7,788,810	233,664
	기타특별회계	7,788,810	233,66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25,262	12,75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27,291	6,819
	주차장 특별회계	4,590,956	137,729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79,573	11,387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163,728	64,912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0	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4,66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